

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로서, 생활이 어려우신 유공자분들께 송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“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”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지급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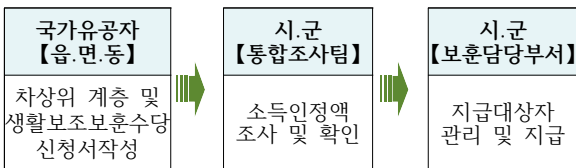
- ☞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로서
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
 - 다음 차상위 계층
 - 자활사업참여, 본인부담의료비경감자,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령자, 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2% 이하 포함),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
- ※ 5.18민주유공자의 경우 [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(月10만원)]으로 이동하여 지급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

※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기준에 의함

지급 신청

- ☞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☞ 문 의 : 시·군·구 보훈담당부서 / 읍면동 보훈 담당자 / 120 콜센터
- ☞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☞ 구비서류
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- 생활보조보훈수당 지급 신청서
 -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국가유공자증 등)
 - 통장사본(본인)
- ☞ 신청 및 지급절차



지급 대상 확인

- ☞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지급대상 포함 여부 등을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 이하 소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, 소득인정액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- ☞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 보유한 자료 검색을 통하여 기준 소득 이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분들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- ☞ 정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

수당 지급

- ☞ 지급시기 : 신청일이 속하는 달
 - ※ 단, 15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일에 한함.
 - 16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달 부터 지급 (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)
- ☞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
- ☞ 지 급 액 : 1인당 月 10만원씩
- ☞ 지급방식 :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
- ☞ 채무불이행, 치매, 거동불편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 - 대리수령인(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 방계 혈족, 실질적인 보호자) 계좌에 입금
 - ※ 다만, 본인 계좌개설이 어려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요양시설(시설입소자)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지급 제외